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 수 원 지 방 법 원

## 제 3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7구합627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청장

변 론 종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8. 22.

## 주 문

1.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405,640원, 지방교육세 1,690,670원, 농어촌특별세 292,090원을 초과하는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총 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별지 1 처분목록 '총 세액'란 기재와 같은 피고의 2016. 6. 15.자 각 부과처분의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9.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2. 12.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동 1802에 있는 [redacted]오비즈타워 2815호(건축물 231.38㎡, 토지 28.0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경감을 신청하였는데, 그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사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중 100분의 50을 경감해주었고, 원고는 2015. 12. 10. 주업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에서 접착제, 친환경페인트의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는 별지 2 도면과 같고, 각 시설별 전유면적(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 구 분 | 이 사건부동산 | 기업부설연구소 | 업무지원시설* | 공동사용부분** |
|---|---|---|---|---|
| 전유면적 | 115.74 | 30.42 | 32.50 | 52.82 |
| 공용면적 | 115.64 | 30.39 | 32.47 | 52.78 |
| 계 | 231.38 | 60.81 | 64.97 | 105.60 |

* 업무지원시설이란 임원실, 경영관리, 특허관리, 상품기획팀 사용부분임.

** 공동사용부분은 연구소와 업무지원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통로, 탕비실, 공동사무기기 설치부분임.

---

부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위 각 부과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한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주위적 청구만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마. 피고는 2016. 6. 1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경감은 불가하나, 이 사건 부동산 중 60.81㎡(공용면적 포함, 이하 같다)를 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중 100분의 50에 대한 경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한 후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 30.42㎡에 전체 공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면적인 30.39㎡[=전체 공용면적 115.64㎡ ×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 30.42㎡ / 전체 전용면적 115.74㎡),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합한 면적인 60.81㎡(=30.42㎡ + 30.39㎡)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고, 그에 관한 취득세를 경감하여 별지 1 처분목록 '총 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6. 9.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7. 3. 2. 직권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부분에 대한 취득세 경감이 잘못되었다는 사유(즉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원고는 중소기업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취득세의 경감 비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75가 되어야 한다)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2,964,760원, 지방교육세 373,890원, 농어촌특별세 62,310원을 감액하면서 위 각 금원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결의를 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이 이루어진 후 남은 부분은 별지 1 처분목록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나머지 세액'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감경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2017. 3. 2. 직권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부분에 대한 취득세 경감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2,964,760원, 지방교육세 373,890원, 농어촌특별세 62,310원을 감액하면서 위 각 금원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처분목록 중 '나머지 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원고의 주장 중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경감 비율이 100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같은 취지로 감액되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무실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같은 법에서 정한 취득세 경감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의 라.항 기재 공동사용부분(회의실, 통로, 탕비실, 공동사무기기 설치공간 등)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에도 사용되므로 위 공동사용부분 중 기업부설연구소 사용분에 해당하는 51.05㎡[=공동사용부분 105.60㎡ × 기업부설연구소 60.81㎡ / (기업부설연구소 60.81㎡ + 업무지원시설 64.97㎡), 이하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이라고 한다]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규정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시설용'이라 함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을 의미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6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6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은 명백히 특혜규정인 감면요건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6항은 시장·군수 등은 제품을 직접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을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이고, 사무실만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하게 할 수는 없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 관련 법리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품을 직접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 내에'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사무실 역시 해당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된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건축물 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경기 화성시에서 접착제, 친환경페인트를 제조하는 공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에는 별다른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5. 3. 대통령령 제27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펴보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전용부분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공용부분의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공용면적 중 건축물 전체의 전용면적에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대법원 2015. 6. 23.자 2015두39477 판결, 그 원심판결인 [redacted]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5018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9. 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시설의 일부인 부대시설에 연구전담요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연구전담요원 등이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반대 해석상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을 연구시설의 일부인 부대시설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 중 회의실, 탕비실, 공동사무기기 설치공간 부분에 관한 이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현황(즉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위 공간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원고 내부에서 이루어진 건물 사용에 관한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위 공동사용부분에 관한 연구시설과 업무지원시설 사이의 공동 이용관계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 내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은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은 모두 전유부분으로서 위 사용부분 중 통로 등 일정 부분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전유부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전유부분이 다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대시설로서 사용된다거나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6. 3. 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면서 변경 신청서(을 제6호증)에 '유형: 독립공간(소유)', '전용면적: 30.42㎡'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사용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13,405,640원, 지방교육세 1,690,670원, 농어촌특별세 292,090원을 초과하는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신혜원

판사 이창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별지 1

## 처분목록

| 세목 | 본세 | 가산세 | | 총 세액 | 환급세액 | 나머지 세액 |
|---|---|---|---|---|---|---|
| | | 일반무신고 | 납부불성실 | | | |
| 취득세 | 13,032,730 | 2,606,540 | 731,130 | 16,370,400 | 2,964,760 | 13,405,640 |
| 지방교육세 | 1,954,900 | - | 109,660 | 2,064,560 | 373,890 | 1,690,670 |
| 농어촌특별세 | 336,130 | - | 18,270 | 354,400 | 62,310 | 292,090 |
| 합계 | 15,323,760 | 2,606,540 | 859,060 | 18,789,360 | 3,400,960 | 15,388,400 |
| | | | | | | 단위 원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별지 2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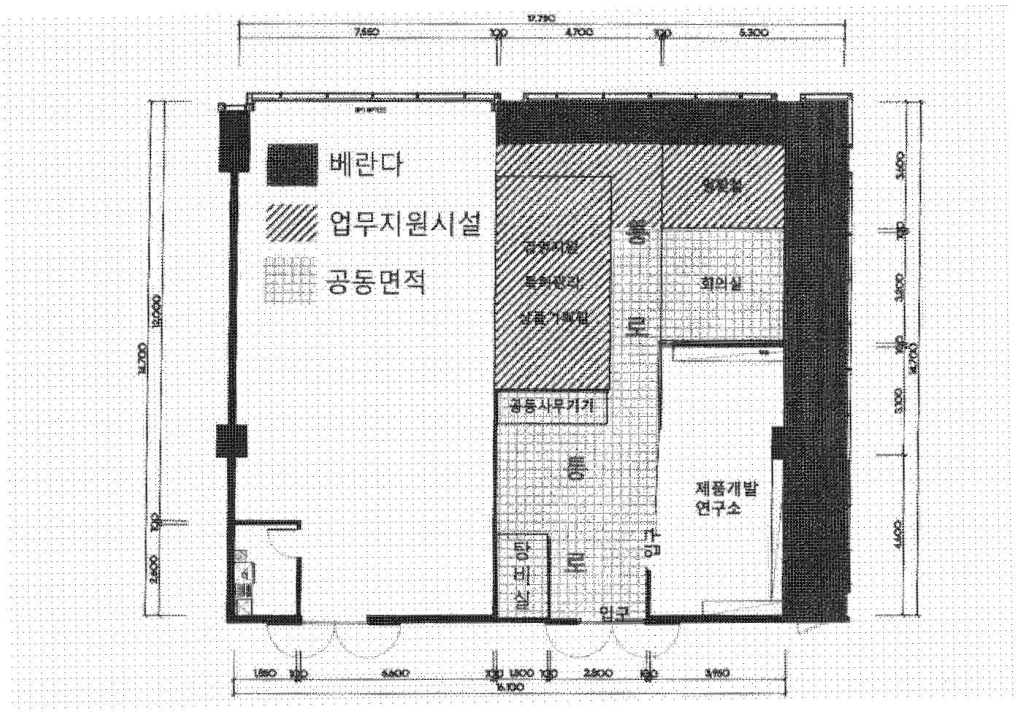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별지 3

##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5. 3. 대통령령 제27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2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9. 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끝.